국회경호처법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92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 장철민·박용갑·황정아

허성무 · 조승래 · 천하람

허 영 · 위성락 · 이재정

윤종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엄령으로 경찰 및 군병력이 국회를 폐쇄하고 침투하여 헌법 기관인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의 신체를 구속하고,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에 관한 본회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 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함.

또한 최근에는 시위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켜 9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헌법기관인 법원·헌법재판소,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는 「통합방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헌법기관으로 자체적인 전문 경호·경비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호·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관,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 및 범위,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경호처법」을 제정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8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경호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국회의 질서를 유 지하며, 국회청사 등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호・경비하는 등 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 2. "소속공무원"이란 국회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 3.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 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위) 경호처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4조(직무) 경호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의장, 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경호
 - 2. 국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중요 인물의 경호

- 3. 국회 및 의장공관의 경호
- 4. 국회의 회의(「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의 질서유지
- 5. 그 밖에 국회의 경호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처장) ① 국회경호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②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경호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경호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국회법」 제22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

적에 관한 사항

-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공무원의 임용) 경호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조직) ① 경호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 용할 때에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 ② 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이나 특정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인 별정직국가공

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 이상 일반직 또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수 있다.

- ④ 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와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와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소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소속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소속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1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12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 2.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3. 야간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직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

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제13조(벌칙)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을 "청사 관리 및 후생"으로 한다.